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건의

< 본회 휴대폰협의회 >

본회는 최근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자파를 소음, 진동, 악취 등과 같은 생활환경의 범주로 규정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휴대폰산업협의회 등 관련기기 제조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 등 관계기관에 반대 입장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본회는, 지난해 12월 20일 박인상의원 등 62인 으로부터 발의된 환경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에서 "전자파를 소음,진동, 악취 등과 같은 생활환경의 범주로 규정'(안 제 3조 제 3호)하고 '전자파의 위해성에 관한 연구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안 제 21조의 3)라고 되어 있어 만일 이것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정보통신산업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반대 사유를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전자파가 암 유발 등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입증 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과 같은 범주의 환경인자로 규정한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또한 ▲현재에도 전파법 등에 의해 전자기기 등에 대한 규제가 세계적으로 가장 강화되어 있는데 새로운 법으로 중복규제를 할 경우 생산원가 상승, 제품출하 지연 등 막대한 비용과 불편이 따를 뿐 아니라, ▲국민들로 하여금 전자파 발생기기에 대한 불안감을 지나치게 고조시킴으로써 전자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저하 뿐 아니라 국민민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본회는, 법률개정안의 철회를 건의하는 한편, 아울러 전자파가 인체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전자계(EMF: ElectroMagnetic Field)프로젝트" 등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확증된 국내의 연구결과, 외국의 입법화 및 규제추세 등을 감안하여 우리나라도 입법

화 등 관련 정책의 시행을 제안하였다.

한편 본회는 국회 및 관계 기관에 위와 같은 내용의 의견을 제출한데 이어, 그동안 IMF 극복 및 국내경기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정보통신 산업이 최근 내수 및 수출 양면에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정부가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여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판단하에 관련 단체 및 기관과 연대하여 이를 적극 호소할 계획이다.

1. 의견 요지

○ 개정안중 전자파 관련 부분의 삭제

개 정 안	전자산업진흥회 건의안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전자파 등 사람의 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제3조 (정의) 1. ~ 2. (생략) 3. 일조 등
제21조의 3 (전자파의 위해 예방) 정부는 전자파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자파의 위해성에 관한 연구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의 3 <삭 제>

2. 의견 제출 사유

○ 전자파가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준다는 사실이 공식 입증된 바가 없음

선진국 등 세계적으로 전자파의 유해성은 입증된 바가 없다.

최근 정부주관의 연구결과(서울의대 생화학교실 및 유전자이식연구소)에서는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아직은 유무해 논란이 있을 뿐인 사항에 대하여 이를 유해한 것으로 단정지어서 입법화함은 곤란하다.

※ 세계보건기구(WHO)는 “국제전자계(EMF; ElectroMagnetic Field)프로젝트” 등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조사 연구를 통해 2005년에 결론을 내릴 예정

○ 전자파에 관해서는 이미 전파법 등에 의하여 규제하고 있으므로 이를 환경정책기본법에 관련 조항을 만들어 규제함은 과잉 중복 규제

90년대 초부터 전파법에 의해 전자정보 통신기기, 의료기기 등 전자파 발신기기에 대해 일정기준을 정해 전자파장해(EMI, Electro Magnetic Interference) 검정을 실시하였다.



세계적으로 아직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전자파내성 (EMS, Electro magnetic Susceptibility) 기준을 '99년부터 의무 적용 중이다.

2000. 12. 15 정보통신부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고시하고 2002. 1. 1부터 시행 개시하였다.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휴대폰에 대하여는 미국 FCC의 규정인 전자파 흡수율 (SAR, Specific Absorption Rate) 기준을 적용하여 우선 적용중이다.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전기용품안전기준 운용요령(기술표준원 고시 제 2000-154호)에 의해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내성 시험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의 전자파 관련 규제는 국제적인 추세와 비교해도 가장 앞서가는 상황이다.

○ 유무해 논란이 결론 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자파를 환경오염 물질로 입법화함은 국민들로 하여금 지나친 불안감 조성

국내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전자파로 인한 영향에 대하여 법제화 할 경우 이로 인해 국민들이 필요 이상의 불안감을 가지게 되고 전자기기에

대해 불신감이 조성됨은 국민민복에도 저해하다.

또한 고압선 주변 지역주민, 고주파기기 사용자 등의 전자파 발생과 관련된 소송 등 민원이 대폭 증가하는 등 혼란 초래 가능성이 지대하다.

※ 전자파를 환경오염 대상으로 포함하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대한 개정법률안은 1999년에 의원입법으로 추진 중 국회의 소관위원회에서 각각된 바 있어 이를 재추진 함은 입법, 행정 등 많은 부문의 낭비 초래

○ 현재 어려운 국내 경제 활성화의 주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정보통신 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되어 국가경제에도 불이익

97년 이후 휴대폰 등 전자정보통신기기는 IMF 극복의 일등공신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최근 IMF 이후 제2의 경기침체를 맞은 상태에서 전자 정보통신기기가 최대의 무역흑자(2000년 245억불, 2001년 약 180억불 추정)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과도한 규제는 제품 원가상승, 출하시기 지연 등이 초래되어 전자 정보통신기기의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으로 우려된다.